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공포, 2016. 6. 25.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의2)

- 1)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함.
- 2) 입주자와 사용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함.

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안 제23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수당의 지원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을 정지함.

다.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5천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2. 10. ~ 2019. 1. 21., 2. 1.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평가인증 제도”를 “평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감

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1조의3의 제목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를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6.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가. 사망한 경우

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라.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9까지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

집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3(중전의 제25조의2)제1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25조의4(중전의 제25조의3)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25조의6(중전의 제25조의5)제2항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5”로 한다.

제25조의7(중전의 제25조의6)제4항 중 “제25조의5 및 제1항부터”를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로 한다.

제25조의8(중전의 제25조의7)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8제2항”을 “제25

조의9제2항”으로, “소속하였던”을 “소속되었던”으로 한다.

제25조의9(중전의 제25조의8)제7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2호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평가인증”을 “평가”로 한다.

제26조의4제1호 중 “제25조의3 및 별표 1의3”을 “제25조의4 및 별표 1의4”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를 각각 별표 1의3부터 별표 1의5까지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중전의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25조의2제1항 관련)”을 “(제25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4(중전의 별표 1의3)의 제목 중 “(제25조의3 관련)”을 “(제25조의4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5(중 전의 별표 1의4)의 제목 중 “(제25조의5제2항 관련)”을 “(제25조의6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포상금 지급의 기준(제25조의2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액	포상금
가. 1천만원 이하	반환액 × 30/100
나. 1천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 [(반환액 - 1천만원) × 20/100]
다. 1억원 초과	2,100만원 + [(반환액 - 1억원) × 10/100] 다만,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사용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3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300만원

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사용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다.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15일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200만원

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5일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이하 “아동학대”라 한다)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한 경우: 200만원

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로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킨 경우: 200만원

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50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 략)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의 <u>평가인증 제도</u> 에 관한 사 항 3의2. 삭 제 4. (생 략) ② (생 략)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평가</u>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 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u>일시보육 서비스</u> 의 제공 1의2. ~ 9.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 ----- ----- -----. 1. <u>시간제보육</u> ----- 1의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 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연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u>	<삭 제>

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4. 어린이집 평가척도의 개발

5.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3(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생략)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

-----.

1. (현행과 같음)

2.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의8(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2.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6.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삭 제>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영유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
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
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임산
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
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
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
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
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동산
·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
과 「보험업법」 제4조제1
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군
인연금법」 · 「별정우체국
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 「고용보험법」 ·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참
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
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
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
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른 간호수당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
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
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
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

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
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
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
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
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
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
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
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
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
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
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
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
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
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
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
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
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3항제2호: 제21조의9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
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종·정원·
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
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
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제21조의9(금융정보 등의 범위)

<삭 제>

①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
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
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
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
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
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②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21조의10(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

<삭 제>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 (家口員) 또는 비용 지원이 확 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 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 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 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 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 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 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로 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
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
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4조
의6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
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
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가. 사망한 경우

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

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

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

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

된 경우

라.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

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

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

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

<신 설>

는 경우

2.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

· 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

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절차 및 기준

<u>제25조의2</u>(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u>별표 1의2와 같다.</u> ② ~ ④ (생략) <u>제25조의3</u>(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u>별표 1의3의 기준</u>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u>제25조의4</u> (생략) <u>제25조의5</u>(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 ① (생략)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시기는 <u>별표 1의4와 같다.</u> <u>제25조의6</u>(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 ③ (생략)	<u>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 <u>제25조의3</u>(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① ----- ----- <u>별표 1의3과 ----.</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25조의4</u>(과징금의 산정기준) -- ----- ----- ----- ----- ----- <u>별표 1의4</u>----- -----. <u>제25조의5</u> (현행 제25조의4와 같음) <u>제25조의6</u>(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별표 1의5</u>-----. <u>제25조의7</u>(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u>제25조의5 및 제1항부터</u>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u>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u> ① (생략)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제25조의8제2항</u>에 따른 공표 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u>소속 하였던</u>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3. (생략) <u>제25조의8(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u> ① 삭제 ② ~ ⑥ (생략) ⑦ <u>제1항부터</u>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u>제26조(권한의 위임)</u>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음) ④ <u>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u> ----- ----- -----. <u>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제25조의9제2항</u>----- ----- <u>소속</u> <u>되었던</u> ----- ----- 2. 3. (현행과 같음) <u>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u>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제2항</u>----- ----- ----- -----. <u>제26조(권한의 위임)</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에 관한 사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1. ~ 3.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11. (현행과 같음)

12. ----- 시간
제보육 -----

13. ~ 15. (생략)	13. ~ 15. (현행과 같음)
16.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무	16. ----- 평가-----
17. ~ 29. (생략)	17. ~ 29.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제25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1. 제25조의4 및 별표 1의4-----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541